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고시 준수사항 (1000kW이상 고객)

항 목	관 련 근 거	직무수행 내용	위반시 벌칙			
선임의무	-전기사업법 제73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) ② 제1항·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	-소유자·점유자가 선임 -위탁선임 (전기안전관리전문, 시설관리전문) -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필하여야 한다.	전기사업법 제104조(벌칙)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<u>500만원 이하의 벌금</u> 에 처한다.			
직무고시 의 무	-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재44조 ③ (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) -직무고시에서 정한 직무 제6조(점검에관한기록·보존)제3항 제7조(법정검사 전 조치사항)제3항 제11조(전기설비·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) 제16조(복장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)	-정기검사시 확인 (안전공사) 선임형태 확인 안전장구 착용 입회, 운전·조작 점검기록 서류 제시(15종) -점검장비 확보 (권장사항) 계전기시험기, 내압진단장비, 열화상진단, 전력분석계, 절연저항계, 접지저항계, 누설저항계	전기사업법 제10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.7.30, 2016.1.27.> 1.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2.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.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.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			

-상주고객 현장의 여건 대부분 타 업무 과중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했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현장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.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계측장비가 없는 고객이 대부분이며 안전관리자가 계측장비를 취급해본 경험이 없어 직무수행 중 사고 우려가 있음. 혅 문 제 점 -자격증대여 고객 *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(벌칙)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: 자격증 취소 및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-정밀(연차)점검을 외부 업체에 의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 관련, 별표3(신고기준 및 업무)에 의거 신고 된 "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진단업체"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[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 전문분야] 에게 엔지니어링 활동(진단, 점검)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. 대 * 관련근거 : 전기안전관리규정(상주) [2016년 예시] [한국전기기술인협회] [한국전기안전공사] 제5조(안전점검 및 측정) ⑤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

정밀(연차)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

국가기술자격법

[법률 제12625호, 2014.5.20., 일부개정]

제15조(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의무등)

-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,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15조의4(포상금의지급)

-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,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국가기술자격의취소등)

-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.
-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- 3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벌칙)

-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
- 2.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

전기사업법

제6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-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04조(벌칙)

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<u>500만원</u>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08조(과태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2.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3.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
- 4.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
- 4의2.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5. 제73조의8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,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6.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7.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- 8. 제9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9조제4항, 제26조, 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
- 2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4.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
- 5.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(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)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6.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전기사업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4.4.24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
1. 법 제9조제4항, 제26조, 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1 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제108조제2항제1호	80만원
2.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2호	50만원
3. 법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 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3호	50만원
4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1호	200만원
4의2.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 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2호	200만원
5.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4호	50만원
6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(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 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)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5호	50만원
7.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 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3호	200만원
8. 법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 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4호	200만원
9. 법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6호	50만원
10.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 거나,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 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5호	200만원
11.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6호	200만원
12.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7호	200만원

[별표 1]

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(고시 제3조 관련)

			주기						
측정ㆍ시험항목		월 차	분 기	반 기	연 차	공사중	감 리	기록서식	
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		0	0	0	0	0	0	별지 제1호	
저압 전기설비 점검								별지 제2호	
	- 절연저항 측정		_	Δ	0	_	_		
	- 누설전류 측정		Δ	Δ		-	-	는 전기 기계 스로	
- 접지	- 접지저항 측정			0	0		_		
고압 7	고압 전기설비 점검								
- 절연	- 절연저항 측정		_	_	0	-	-	별지 제3호	
- 접지저항 측정		-	_	-	0	-	-		
- 절연내력 측정		-	-	-	0	-	-		
변압기	변압기 점검		-	-	0	-	-		
- 절연저항		_	_	-	0	_	_	별지 제4호	
- 절연내력, 산가도 측정(절연유)		-	_	-	Δ	-	-		
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		-	-	-	0	-	-	별지 제5호	
예비	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	-	-	0	0	-	-		
발전	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	-	_	0	0	-	-	별지 제6호	
설비	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	-	0	0	0	-	-		
적외선 열화상 측정		-	0	0	0	-	-	별지 제7호	
전원품질분석		-	-	-	0	-	-	별지 제8호	

[비고] ○ : 필수, △ : 필요시

※ 참고사항

- 1.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"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"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.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·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3. 정밀(연차)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 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
- 4.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·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·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,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